

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발급신청의 방법·절차 등(제15조제2항 관련)

1. 이력번호 발급신청의 내용
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신청인      | 가. 성명(상호 또는 법인명)<br>나. 생년월일(사업체인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)<br>다. 소재지<br>라. 전화번호<br>마. 영업신고(허가)번호<br>바. 팩스번호<br>사. 업종 |
| 검사(반입)장소 | 가. 검사(반입) 장소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수입품목     | 가. 한글명<br>나. 영문명<br>다. 포장수량<br>라. 순무게(kg, t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부위       | 가. 부위명<br>나. 부위별 수량<br>다. 부위별 무게(kg, t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수입내역     | 가. 화물관리번호<br>나. 선하증권번호(bill of lading No.)<br>다. 생산국<br>라. 상대국의 도축장명 및 가공장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2. 신청서의 기록·관리

검역본부장은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, 전화, 구술, 팩스 등으로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그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.

3. 그 밖에 이력번호 발급신청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